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45
----------	-------

발의연월일 : 2026. 4. 7.

발 의 자 : 박성훈 · 김기현 · 이달희
이헌승 · 김성원 · 이인선
김기웅 · 고동진 · 김위상
강명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 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고 이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데 발생한 비용(이하 “약제비”라 한다)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환자는 약제비를 약국에 우선 지급한 후에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약제비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용어를 자동차보험수가로 변경하고,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를 “자동차보험수가(酬價)”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서 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하 “약국”이라 한다)에서 교통사고환자가 의약품을 조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하 “진료비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의료기관”을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조제한 약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를 “의료기관과 그 교통사고환자에게 의약품 조제하여 판매한 약국에 해당 진료 및 의약품 조제에 따른 자동차보험수가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각각 “자동차보험수가”로, “의료기관”을 “의료기관 및 약국(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기관”을 “의료기관등”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

기록”을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약사법」 제30조에 따른 조제기록부의 조제기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의료기관등이 자동차보험수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료기관”을 “의료기관등”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진료비률”을 “진료비등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진료비률”을 “진료비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진료비”를 “진료비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의료기관”을 “의료기관등”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각각 “자동차보험수가”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각각 “자동차보험수가”로, “의료기관”을 각각 “의료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각각 “자동차보험수가”로, “의료기관”을 “의료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후단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진료기록”을 “진료기록 및 조제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료기관”을 각각 “의료기관등”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진료기록”을 “진료기록 또는 조제기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조제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의료기관”을 각각 “의료기관등”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료기관”을 “의료기관등”으로, “진료비”를 “진료비등”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를 “자동차보험수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를 “자동차보험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수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자동차보험수가기준”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회사등

과 의료기관은”을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등은”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자동차보험수가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8명”을 “2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6명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를 “6명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의료기관”을 “의료기관등”으로 한다.

제18조 중 “의료기관”을 “의료기관등”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을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을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등”으로, “의료기관이”를 “의료기관등이”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각각 “자동차보험수가기준”으로 한다.

제22조 중 “의료기관”을 “의료기관등”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각각 “자동차보험수가”로, “의료기관”을 각각 “의료기관등”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제기록부의 조제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조제기록을 작성한 약국

제48조제2항제2호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의료기관”을 “의료기관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9호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 략)</p> <p>7. “<u>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u>”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u>교통사고환자</u>”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u>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u>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가. ~ 다. (생 략)</p> <p>8.·9. (생 략)</p> <p>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자동차보험수가(酬價)</u>----- ----- ----- ----- ----- -----<u>진료를 받</u> <u>거나 의료기관에서 받은 처방</u> <u>전에 따라 「약사법」에 따른</u> <u>약국(이하 “약국”이라 한다)</u> <u>에서 교통사고환자가 의약품</u> <u>을 조제받음으로써 발생하는</u> <u>비용(이하 “진료비등”이라 한</u> <u>다)</u>----- ----- -----.</p> <p style="text-align: center;">가. ~ 다. (현행과 같음)</p> <p>8.·9. (현행과 같음)</p> <p>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 ----- -----</p>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

제30조에 따른 조제기록부의 조제기록-----

-----.

④ -----의료기관등이 자동차보험수가-----

-----.

-----자동차보험수가-----
-----.

⑤ 의료기관등-----
-----자동차보험수

가-----

-----진료비등을-----
-----.

-----진료비등을-----
-----.

1. 2. (현행과 같음)

3. -----
-----진

료비의 경우

4.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 (생략)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의 심사·조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③·④ (생략)

제12조의3(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① 전문심사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료비등-----

4. -----

-----자동차보험수-----

5.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

의료기관등-----자동차보험수-----

-----.

② -----
-----자동차보험수-----자동차보험수-----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① -----

-----자동차보험수-----

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를 통지한 보험회사등은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의2(교통사고환자의 퇴원

·전원 지시) ①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환자에게 퇴원하도록

-----.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 ① -

---자동차보험수가-----

-----.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보험수가-----

-----.

제13조의2(교통사고환자의 퇴원

·전원 지시) ① -----

-----.

다)의 제공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 ⑧ (생략)

⑨ 전문심사기관은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기한, 제공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⑩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전문심사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의료기관등

-----.

⑩ -----의료기관등

-----.

제3장 자동차보험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제15조(자동차보험수가 등) ①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 범위·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

-----의료기관등-----
-----진료비등-----

-----자동차보험수가에-----

-----.

② 자동차보험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수가의-----

-----.

③ -----자동차보험수가기준-----
-----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
-----.

제17조(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 ①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등은-----자동차보험수가-----

-----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

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용은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부담
한다.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
사 청구 등)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이의
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
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를 통지받은 보
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
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
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에 합
의한 것으로 본다.

④ ~ ⑥ (생략)

제20조(심사·결정 절차 등) ①
심의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이를 심

-----의료기관등-----
-----.

제19조(자동차보험수가의 심사
청구 등) ① 보험회사등 및 의
료기관등-----

-----.

② (현행과 같음)

③ -----
-----보험
회사등 및 의료기관등-----

-----의료기관등이-----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심사·결정 절차 등) ① -

-----자동차보험
수가기준-----

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심사 청구 사건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심사·결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2조(심의회의 권한)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
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보험회사등·의료기관·
보험사업자단체 또는 의료사업
자단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
에게 진단 또는 검안 등을 하
게 할 수 있다.

제43조(검사·질문 등) ① 국토교
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소속 공무원에게 재할시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
는 의료기관 또는 제45조제1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

-----자동차보험수가기
준-----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심의회의 권한) -----

-----의료기관등-----

제43조(검사·질문 등) ① -----

-----자동차보험수가-----

-----의료기관등-----

-----자동차보험수가-----의료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행위에 한정한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46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기관등-----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제기록부의 조제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조제기록을 작성한 약국

제4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p>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u>자</u> <u>동차보험진료수가</u>를 교통사고 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 다)에게 청구한 <u>의료기관의</u> 개설자</p> <p>3. ~ 7. (생략) ③ ~ ⑤ (생략)</p>	<p>2. -----<u>자</u> <u>동차보험수가</u>----- ----- -----<u>의료기관등</u>----- ---</p> <p>3.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p>
---	--